2025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별정직(취업지원직)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범 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통한 안전 사회의 꿈을 펼쳐나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장

1 모집 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기관명	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지역)
취업지원직	충남지부	별정직 (무기계약직)	1명	충남지부 (충청남도 홍성군)

2 담당 예정 직무

채용분야	담당 예정 직무
별정직 (취업지원직)	◦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프로그램) 수행 및 대상자 취업 알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관리 ◦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관리 ◦ 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취업지원사업 관련 행정업무 등

*【별첨1】 직무기술서

3 응시자격 원서접수마감일('25.4.30.) 기준

구분	응시자격
공통 응시 자격	◦ 임용예정일 근무 가능한 자 ◦ **만 18세 이상 및 60세(공단정년일) 이하** ◦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규정에 따라 비상대기 및 출동 가능한 자 ◦ 별정직의 경우 현 근무지 내 근무 원칙이나, **인사발령 및 사업 변경 등에 따라 전국 전보발령 가능한 자** ◦ 공단 규범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별첨2】 임용결격사유**
채용분야	**자격요건**
별정직 (취업지원직)	◦ **아래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한 자** **① 직업상담사 2급 이상** **② 사회복지사 2급 이상** **③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운전면허소지자로서 운전 가능한 자**

4 근무조건

구분	근무조건
보수	◦ 공단 별정직 급여 지급 기준에 따름 ***【별첨5】 2024년 별정직(취업지원직) 보수 기준 참조**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법정 휴게시간 1시간
임용시기	◦ 2025년 7월 1일 예정

5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서류전형 (5배수) → 면접시험 → 임용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서류전형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공고기간	'25. 4. 14.(월) ~ '25. 4. 30.(수)	
접수기간	'25. 4. 18.(금) ~ '25. 4. 30.(수)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25. 5. 14.(수)	
면접시험	'25. 5. 21.(수)	**면접시험장 : 충남지부**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25. 6. 5.(목)	
이의신청	'25. 6. 5.(목) ~ '25. 6. 19.(목)	
최종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25. 6. 9.(월) ~ '25. 6. 12.(목)	
임용예정일	**2025. 7. 1.(화)**	

※ 시험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여부는 각 전형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채용사이트, 문자 등)

6 전형단계별 주요 내용

□ 원서접수

구분	근무조건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koreha/)** ※ 우편, 방문,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유의사항	◦ 홈페이지 접수 외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 불가**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9조]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서류전형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정량평가 (30점)	자격사항	15점	◦ 직무관련 자격증
	근무경력	15점	◦ 취업지원업무 근무 경력
정성평가 (70점)	자기소개서	35점	◦ 지원동기의 타당성 및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등
	직무수행계획서	35점	◦ 담당 예정 직무에 대한 역량 및 비전제시 능력

❍ 평가척도

<table>
<tr><th rowspan="2">자격사항 (15점)</th><th colspan="4">정량평가 평가척도</th></tr>
<tr><td colspan="2">직업상담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td><td colspan="2">직업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td></tr>
<tr><td></td><td colspan="2">15점</td><td colspan="2">10점</td></tr>
<tr><td rowspan="2">근무경력 (15점)</td><td>2년 이상</td><td>1년 이상 2년미만</td><td>6개월 이상 1년 미만</td><td>6개월 미만</td></tr>
<tr><td>15점</td><td>13점</td><td>11점</td><td>9점</td></tr>
</table>

※ 자격사항: 가장 상위(최고득점) 자격증 1개만 인정

※ 근무경력: **취업지원 업무**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

❑ '취업지원 업무'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무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상담 관련 분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인기업발굴 및 관리,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을 포함한 그 밖의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일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을 경력종료일로 기재**

◦ 경력사항 **진위여부 및 일치여부**를 발급처(근무기관)에 확인 실시 예정

정성평가 (35점)	정성평가 평가척도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35 ~ 31점	30 ~ 26점	25 ~ 21점	20 ~ 16점	15 ~ 11점

※ 선발배수: 채용인원의 5배수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정량, 정성평가 합계)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면접시험

<table>
<tr><td>시험대상</td><td>서류전형합격자</td></tr>
<tr><td>평가방법</td><td>◦ 구술면접(경험 · 상황 · 인성면접 등)
◦ 평정요소 당 20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정
◦ 면접 시험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1가지로 평가
<table><tr><th>S(탁월)</th><th>A(우수)</th><th>B(보통)</th><th>C(미흡)</th><th>D(불량)</th></tr><tr><td>20점</td><td>16점</td><td>12점</td><td>8점</td><td>4점</td></tr></table>◦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td></tr>
<tr><td>평정요소</td><td>◦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td></tr>
<tr><td>불합격 기준</td><td>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td></tr>
<tr><td>동점자 합격처리 기준</td><td>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고득점자 ⇒ 인사위원회결정</td></tr>
</table>

7 면접시험 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면접시험 응시자

❍ 제출방법 : 면접시험 당일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기회 부여**(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발급기한 : **면접시험일('25. 5. 21.) 기준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연번	증빙서류	비고
1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 연령 및 임용결격사유 확인
2	**자격증 또는 취득확인서**	◦ 필수 및 우대 자격사항 확인
3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 응시요건 확인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 ◦ 해당자에 한함
5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 해당자에 한함
6	**의사상자 증서**	◦ 해당자에 한함
7	① **경력(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 해당자에 한하여 **3가지 서류 모두 제출** - 지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명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택스 등 발급 가능
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재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 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시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 발급 가능여부 확인**

8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 원서접수마감일('25.4.30.) 기준

<table>
<tr><th>연번</th><th>구 분</th><th>적용대상 및 가점</th></tr>
<tr><td>1</td><td>장애인</td><td>◦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td></tr>
<tr><td>2</td><td>취업지원
업무경력</td><td>◦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무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상담 관련 분야(국민취업지원제도, 구인기업발굴 및 관리,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을 포함한 그 밖의 직업 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1.5% 또는 2%
<table>
<tr><th>6개월 이상 ~ 1년 미만</th><th>1년 이상 ~ 2년 미만</th><th>2년 이상</th></tr>
<tr><td>1%</td><td>1.5%</td><td>2%</td></tr>
</table>
</td></tr>
<tr><td>3</td><td>취업지원
대상자</td><td>◦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취업지원(보호)대상자로 규정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td></tr>
<tr><td>4</td><td>의사상자</td><td>◦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규정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5%</td></tr>
<tr><td>5</td><td>우리공단
관련
경력자</td><td>◦ 일반직, 공무직, 기간직 직원 등 공단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2% 또는 3%
<table>
<tr><th>6개월 이상 ~ 1년 미만</th><th>1년 이상 ~ 2년 미만</th><th>2년 이상</th></tr>
<tr><td>1%</td><td>2%</td><td>3%</td></tr>
</table>
</td></tr>
<tr><td>6</td><td>우리공단
체험형
청년인턴</td><td>◦ 6개월 이상 근무 후 수료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2%
<table>
<tr><th>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th><th>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th></tr>
<tr><td>2%</td><td>1%</td></tr>
</table>
</td></tr>
</table>

***【별첨3】 가산특전 세부사항**

가산특전 관련 안내사항

① 가산특전의 경우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가능**
(단, 우리공단 근무경력과 우리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은 **중복 적용 불가**)

②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③ 우리공단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공단 근무 경력 가산특전은 근로시간 등에 비례하여 적용

구분		가산특전 적용(서류전형 만점의 N%)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전일제 근로자		1	2	3
단시간 근로자	② (청소년)평일생활지도사	0.5	0.9	1.4
	③ 보호수용생활지도사	0.5	0.9	1.4
	④ (청소년)주말생활지도사	0.5	0.9	1.4
	⑤ 성인주말생활지도사	0.3	0.5	0.8
	⑥ 홍보역사관 안내	0.4	0.8	1.1

9 예비합격자 운영

❍ 선발인원: 2명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 선발방법: 최종합격자 차순위부터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 선발사유: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 채용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후 순번 순으로 임용**
※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 개별 통보

10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

❍ 채용비위 피해자 단계별 구제절차
- 피해자 특정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불특정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구분	서류전형 단계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특정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그룹 면접시험 재 실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11 유의사항

◦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최종합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체절차 진행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별첨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 채용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사실기입,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충남지부 채용 담당자(☎041-631-6749)**에게 문의

【별첨1】 직무기술서

NCS 기반 직무기술서【취업지원직】

<table>
<tr><td rowspan="4">채용 분야</td><td rowspan="4">직업 상담 서비스</td><td rowspan="4">분류 체계</td><td>대분류</td><td>07. 사회복지·종교</td></tr>
<tr><td>중분류</td><td>02. 상담</td></tr>
<tr><td>소분류</td><td>03. 직업상담서비스</td></tr>
<tr><td>세분류</td><td>01. 직업상담, 02. 취업알선</td></tr>
<tr><td>공단 주요 사업</td><td colspan="4">-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무보호사업의 실시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및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형사정책 사업
-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 전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무보호사업 :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td></tr>
<tr><td>전형 방법</td><td colspan="4">▪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td></tr>
<tr><td>능력 단위</td><td colspan="4">▪ 10 (구인구직발굴계획)
▪ 15 (직업상담행정)
▪ 20 (직업심리검사 실시)
▪ 22 (구직역량분석)
▪ 23 (취업상담)
▪ 42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td></tr>
<tr><td rowspan="2">일반 요건</td><td colspan="2">연령</td><td colspan="2">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및 60세 이하(공단 정년)</td></tr>
<tr><td colspan="2">성별</td><td colspan="2">무관</td></tr>
<tr><td rowspan="2">교육 요건</td><td colspan="2">학력</td><td colspan="2">무관</td></tr>
<tr><td colspan="2">전공</td><td colspan="2">무관</td></tr>
<tr><td>직무 수행 내용</td><td colspan="4">▪ 허그일자리프로그램 접수 및 상담(개인·집단상담 등), 직업심리검사
▪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설계 및 직업능력개발
▪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구인처 발굴 및 관리
▪ 법무보호대상자 동행면접 및 취업알선 등 취업연계
▪ 고용안전정보망 사용 및 운용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 수행
▪ 그룹웨어·법무보호전산시스템 사용 및 운용
▪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문서 기안 및 행정 업무 처리
▪ 법무보호사업 관련 자원봉사자 관리 및 회의 등 지원</td></tr>
<tr><td>필요 지식</td><td colspan="4">▪ (구인구직발굴계획)
지역별, 업종별 고용시장, 취업지원 유관기관 목록, 홍보방법, 신규 구인/구직정보구인 알선과정
▪ (직업상담행정)
기초직업상담심리이론, 개인정보보호법
▪ (직업심리검사 실시)
직업심리검사, 신뢰도와 타당성, 직업심리검사론</td></tr>
</table>

	■ **(구직역량분석)** 대상별 구직자의 특성, 구직역량검사의 종류 및 내용 취업상담론 ■ **(취업상담)**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임금구조이론,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조직심리이론, 직업가치이론, 직업적응상담론 ■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집산상담이론, 집단상담유형, 집단상담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
필요 기술	■ **(구인구직발굴계획)** 홍보매체 선별능력과 활용능력, 활동결과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능력, 구인신청 내용에 대한 분석능력 ■ **(직업상담행정)**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기술, 통계활용능력, 체계적 정리능력 ■ **(직업심리검사 실시)** 직업심리검사도구 실시능력, 검사태도 심층적 관찰기법 ■ **(구직역량분석)** 구직역량검사의 실시, 구직역량검사의 해석, 내담자 구직요구도 분석능력, 검사결과 판독능력 구직자의 문제점 파악 능력, 내담자 구직요구도 분석능력 ■ **(취업상담)** 포괄적 직업상담능력, 지역 노동시장 현황 분석능력, 직업상담서비스 관련 법률 해석능력 ■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집단상담대상 특성분석능력,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능력
직무 수행 태도	■ **(구인구직발굴계획)** 적극적인 업무 추진력, 관련자들에 대한 협력적 업무추진 태도 ■ **(직업상담행정)** 개인정보보호 노력유지, 직업상담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인의식 ■ **(직업심리검사 실시)** 검사 해석을 위한 주의 깊은 관찰, 검사자를 편하게 해주는 배려심 ■ **(구직역량분석)** 내담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려는 하려는 태도,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노력 내담자와 언제라도 의견조율이 가능한 친화력,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편견없는 이해심과 배려심 ■ **(취업상담)** 구직자에 대한 편견없는이해심, 취업률 성공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노력, 내담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 ■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내담자와 소통하려는 의지, 적극적 수용,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공정성 유지 집단프로그램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자격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등
직업 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koreha.or.kr, www.ncs.go.kr ■ 위 직무기술서는 현재 개발된 NCS 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직무와 관련된 NCS를 연계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용어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 직무기술서 직무내용은 기관 사정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향후 NCS 개발 동향과 주요사업 변경 등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임용결격사유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별첨3】 가산특전 세부사항

1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2 취업지원 업무 경력 가산특전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1.5% 또는 2% 가산점 부여)

- 근무기간별 가산점 부여

구분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가산비율	1%	1.5%	2%

3 의사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5% 가산점 부여)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규정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1항에 따라 가산점 부여

5%	3%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상자 본인	◦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 경력자 (근무기간, 시간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에 가산점 부여)

- 일반직, 공무직, 기간직 직원 등 우리 공단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 인 자
-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 등)을 반영·환산하여 가산점 부여

구분		가산특전 적용(서류전형 만점의 N%)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전일제 근로자		1	2	3
단시간 근로자	② (청소년)평일생활지도사	0.5	0.9	1.4
	③ 보호수용생활지도사	0.5	0.9	1.4
	④ (청소년)주말생활지도사	0.5	0.9	1.4
	⑤ 성인주말생활지도사	0.3	0.5	0.8
	⑥ 홍보역사관 안내	0.4	0.8	1.1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일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 우리 공단 체험형 인턴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수료한 경우,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서류전형 만점의 2%** **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 서류전형 만점의 1%** 가산점 부여

※ 단, '공단 근무경력'과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만 적용

6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취업지원(보호)대상자로 규정된 자

10%	대상별	5%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의 가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보훈보상 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 5·18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5·18 민주 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별첨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첨5】 2024년 별정직(취업지원직) 보수 기준

가. 급여구성

❍ 월 고정급 : 본봉, 정액급식비, 갱생보호수당

❍ 상여금 :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 기타수당 등 : 연장근무수당, 복지포인트, 퇴직금

나. 월 고정급

(단위 : 원)

구 분	'23년 본봉	'24년 본봉 (a)	정액급식비 (b)	갱생보호수당 (c)	월 고정급 (a+b+c)	비 고
1년 미만	1,775,000	1,820,000	140,000	140,000	2,100,000	근속년수 상승에 따른 본봉 인상
1년 이상~2년 미만	1,851,000	1,898,000	140,000	140,000	2,178,000	
2년 이상~3년 미만	1,953,000	2,002,000	140,000	140,000	2,282,000	
3년 이상~4년 미만	2,052,000	2,104,000	140,000	140,000	2,384,000	
4년 이상~5년 미만	2,163,000	2,218,000	140,000	140,000	2,498,000	
5년 이상~6년 미만	2,333,000	2,392,000	140,000	140,000	2,672,000	
6년 이상~7년 미만	2,409,000	2,470,000	140,000	140,000	2,750,000	
7년 이상~8년 미만	2,511,000	2,574,000	140,000	140,000	2,854,000	
8년 이상~9년 미만	2,609,000	2,675,000	140,000	140,000	2,955,000	
9년 이상~10년 미만	2,706,000	2,774,000	140,000	140,000	3,054,000	

다. 상여금

❍ 명절휴가비 : 연 800,000원(설, 추석 각 400,000원)

❍ 성과상여금

- 지급대상 : 성과평가 대상자(연 2회 지급)